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 .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교육경비 보조지원 기준액의 범위를 확대하여 초·중·고 무상급식 지원, 학교교육지원 등 교육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보조금 기준액의 범위 확대(안 제3조 제1항)

- 시세 수입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예산의 범위 내

나. 위원의 이해충돌방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를 “드는 경비를 보조할 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요되는 경비중”을 “필요한 경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1명이내”를 “11명 이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위원중에서”를 “위원 중”으로 한다.

5. 구미시 고등학교장 협의회장 1명

③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제1항 중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회부하여”를 “부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소요되는 경비중”을 “필요한 경비중”으로, “부분외의경비”를 “부분 외의 경비”로, “부담하는 방법”을 “방법”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를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언”을 “받”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단서 중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를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한다.

제10조 중 “「구미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 ----- -----드는 경비를 <u>보조할 때</u> ----- -----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급학교 교육에 <u>소요되는 경비중</u> 보조할 수 있는 사업 (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①----- ----- ----- <u>필요한 경비 중</u> ----- ----- ----- -----.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 --
제3조(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①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시세(세외수입제외) 수입액의 10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내에서 지원	제3조(보조금의 기준액의 범위)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시세수입액은 전전
년도 일반회계 시세수입결산액
을 기준으로 한다.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 략)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4. (생 략)

5. 구미지구 현장 장학협의회장
1명

6. ~ 8. (생 략)

<신 설>

③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
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
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

제4조(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11명 이내

-----.

1. ~ 4. (현행과 같음)

5. 구미시 고등학교장 협의회장
1명

6. ~ 8.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
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 위원 중 -----
---. -----

를 대행한다.

④ ~ ⑦ (생략)

<신설>

-----.

⑤ ~ ⑧ (현행 제4항부터 제7항까지와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 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시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 해당연도 -----

-----.
②-----

교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8.5.13. 개정>,

③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각급학교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교부신청서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4. (생 략)

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목적외의 사용금지) ①각급 학교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처

③

각 호

1. · 2. (현행과 같음)

3. ----- 필요한 경비 중 ----- 부분 외의 경비-----
방법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6조(목적외의 사용금지) ①-----
-----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
----- 받-----.

②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의2(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생략)

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7조(보고 및 검사)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개시보고서

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 경리 보고서

②-----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

제6조의2(보조사업의 변경·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대해서-----.

제7조(보고 및 검사) ①-----

----- 사업

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

-----.

<삭제>

<삭제>

3. <u>보조사업을 종료한 때에는</u> <u>사업종료(실적)보고서</u>	<u><삭 제></u>
4. <u>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u> <u>대한 보고서</u>	<u><삭 제></u>
②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u>기하기 위하여</u>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 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 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u>위하여</u> ----- ----- ----- ----- -----.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이 조 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보조 금 관리에 관한 법률」, 「<u>구미 시 보조금관리 조례</u>」를 적용한 다.	제10조(다른법률과의 관계) ---- ----- ----- ----- ----- <u>「구미 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u> ---- --.

관계법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8. 9. 17., 2000. 12. 27., 2007. 12. 28.>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 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0. 12. 27.>

1.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제목개정 2000. 12. 27.]

제4조(보조의 신청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거쳐 보조대상사업

및 그 예산액을 통지하거나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제5조(목적외 사용의 금지) ①각급학교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2. 2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1.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8., 2018. 12. 18.>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28.>

제7조(보조금의 집행)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1. 공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립의 유치원의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2. 사립의 각급학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교비회계의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8.]

부칙 <제29395호, 2018. 12. 1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참고사항

6. 교육경비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

㉡ 평가대상 조문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0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0명을 포함한 00명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 □□□,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 0명, △△△ 0명, ◎◎◎ 0명을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0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평가기준 : 이해충돌가능성(3-3)

㉡ 문제점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투명성 부족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는 보조대상사업 심의·선정, 우선순위 결정 등 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

— 실태조사 결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도 없이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 저하

— 또한, 지자체·교육청 공무원과 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운영 하거나, 내부 직원으로만 구성·운영 하는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심의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음

※ 13개 지자체는 공무원·지방의원만으로 위원회 구성, 29개 지자체는 위원회 미구성

→ 지자체의 학교별 지원액 심사의 공정성·투명성 확보장치 필요

[참고 1]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 근거: 지자체별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무상급식 관련 조례 등 활용)
- ▶ 구성: 지자체 간부, 지방의회 의원, 교육청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교사, 학부모, 주민대표 등
- ▶ 주요 심의내용
 - ①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②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 ③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④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 ⑤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 ⑥ 기타 단체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 사항 등

[참고 2] 지자체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및 사례

구분	계	공무원	지방의원	교육공무원	교육전문가	주민대표	교사		학부모	
							대표	일반	대표	일반
인원	2,236	768	376	316	290	220	40	79	117	30
(비율)	100%	34.3%	16.8%	14.1%	13.0%	9.8%	1.8%	3.5%	5.2%	1.3%
○○시	12	4	2	1	2	1	1		1	
○○구	13	3	3	1	3			1		2
○○구	9	4	3	2						
○○군	18	18								
○○도; 위원회 없음										

(지자체 제출자료 분석 - 권익위 '13.5월)

㉡ 개선방안

-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 및 외부 위원 비율 확대
 -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장치 마련
 -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중 외부위원(교육전문가, 지역주민, 학부모 및 교사대표 등)이 전체의 1/3이상일 수 있도록 위원구성 다변화 및 확대
 - ※ 현재 심의위원회가 미구성된 지자체는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심의위원회 규정을 신설·구성

소관 실 · 과		교육지원과
입 안 자	과 장	최 동 문
	담 당	김 종 연
	담 당 자	박 은 주 (480-2702)